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759
----------	------

제출년월일 : 2015.11.18.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안이유

-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 불필요한 조문 및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부합하도록 정비

- 기존 ‘업종’ 위주로 정한 조문 → ‘사업장 규모’ 위주로 조문 개정(안 제2조제3호)
- 불합리한 지방규제 조항 삭제(안 제12조제3항)
- 법에 어긋나는 조문 정비(안 제18조제1항)

나. 불필요한 조문 및 일부 용어 정비

- 2013. 1. 1.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 징수방식 변경에 따른 기존 잔제 조항 정비(안 제9조)
- 조례 용어 중 ‘규격봉투’ 를 ‘종량제 봉투’ 로 수정

개정조례안 : 붙임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3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사전예고(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 : 2015. 10. 14. ~ 2015. 11. 03. (20일간)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붙임4
- 방침결정문 : 붙임5

< 붙임 1 >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중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사업장은 그 사업장 규모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외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납부필증” (이하 “납부필증” 이라 한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발행하여 판매하는 증서를 말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라 한다)하여야 한다.
-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여건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용 종량제 봉투(이하 “종량제 봉투” 라 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가격으로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 라 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납부필증 판매가격으로 하며, 기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제3항 중 “규격봉투” 를 “종량제 봉투” 로, “아니된다” 를 “아니 된다” 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2항 중 “규격봉투” 를 각각 “종량제 봉투” 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12조 및 제15조” 를 “제15조” 로, “부과할 수 있다.” 를 “부과 한다.”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청소행정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청소행정과장 최 관
	계장·팀장 직위·성명	재활용계장 노 현 우
	담 당 자 성명·전화	박 경 서 (행정 3538)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3. <u>“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u></p> <p style="padding-left: 20px;"><u>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u></p> <p style="padding-left: 20px;"><u>나.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의 사업장. 다만,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영업에 해당하는 다류·주류 등의 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은 제외한다.</u></p> <p>4. ~ 6. 생략</p> <p><u><신설></u></p>	<p>제2조(정의) -----</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중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사업장은 그 사업장 규모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외한다.</u></p> <p>4. ~ 6. (현행과 같음)</p> <p>7. <u>“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납부필증” (이하 “납부필증” 이라 한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발행하여 판매하는 증서를 말한다.</u></p>

현행	개정안
<p>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용 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율을 달리하여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라 한다)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여건에 따라 규격봉투 판매가격, 공동 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에 따른 납부고지 및 기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p> <p>④ ~ ⑤ (생략)</p>	<p>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라 한다)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여건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용 종량제 봉투(이하 “종량제 봉투”라 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가격으로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납부필증 판매가격으로 하며, 기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p> <p>① ~ ② (생략)</p> <p>③ 법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한 후 규격봉투 또는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배출하되 생활폐기물 또는 재활용가능 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종량제 봉투----- ----- ----- -----아니 된다.</p>

현행	개정안
<p>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규격봉투의 종류·재질)</p> <p>① (생략)</p> <p>② <u>규격봉투의 색상·재질 및 제작에 관하여는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다.</u></p>	<p>제11조(-----)</p> <p><u>종량제 봉투-----)</u></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종량제 봉투-----</u></p> <p>-----</p> <p>-----</p>
<p>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p> <p>① ~ ② (생략)</p> <p>③ <u>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u>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u></u></p>	<p>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삭제></p>
<p>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① <u>시장은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u></p> <p>② ~ ④ (생략)</p>	<p>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①-----</p> <p><u>제15조-----</u></p> <p>-----</p> <p>-----</p> <p>-----</p> <p>-----</p> <p>-----<u>부과한다.</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759
----------	------

제안년월일 : 2015년 12월 9일
제안자 : 도시환경위원장

수정이유

- 안 제12조제1항의 근거 조문인 폐기물관리법 제13조는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조례로 위임한 규정이 없으나,
-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 성질, 상태별로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12조제1항의 근거조문을 법 제15조로 수정함.

주요내용

- 안 제12조제1항의 근거조문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서 제15조로 수정함.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제1항 중 “법 제13조” 를 “법 제15조” 로 수정한다.

